

##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2757호

나. 발 의 자 : 노승재 의원

다. 발의일자 : 2021년 10월 13일

라. 회부일자 : 2021년 10월 20일

### 2. 제안이유

노인인구의 증가와 평균수명 연장에 따라 노인의 체육활동 지원은 건강한 노후생활을 가능하게 하여 노인 의료비 증가 등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 마련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노인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기 위한 지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7조의2)

#### 4.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주우철)

#####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노인의 건강과 체력증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인체육 강좌·시설을 설치·운영하고 국내외 교류를 위한 행사·홍보 등 노인체육 진흥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임.

##### 나. 노인체육 진흥 법적 검토

- 관련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2제1항1)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형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에서도 제9조제2항제2호라목에서 노인의 보호와 복지 증진을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반영을 위한 법적근거는 충분함.

##### 다. 노인체육 진흥의 용어 및 추진사업(안 제17조의2)

- 개정안은 노인체육 진흥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고자 안 제17조의2(노인체육의 진흥)을 신설하여 시장이 노인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함.

---

1)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2(노인 체육의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 설&gt;</u></p>	<p>제17조의2(노인체육의 진흥) 시장은 노인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노인체육 진흥에 관한 사업을 추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노인체육 관련 강좌의 설치·운영</li> <li>2. 노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및 대회·행사 등의 개최</li> <li>3. 노인체육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li> <li>4. 노인체육 관련 프로그램의 연구·개발</li> <li>5. 노인체육에 대한 홍보 및 인식개선</li> <li>6. 노인체육 관련 단체와 동호회 조직의 육성</li> <li>7. 그 밖에 노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li> </ol>

-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는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생활체육 진흥, 체육복지 진흥, 체육인 인권 관련 조례를 통합 운영하여 입법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2021.3.)하였고 체계상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분류하여 구성되어 있음.
- 생활체육의 범주에 있는 노인체육을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할 경우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등 생애주기별로 분류하는 변곡점이 될 수 있어 적절치 않음.
- 노인체육의 경우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7조(건강증진)에서 ‘시장은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노인을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체육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중복될 우려가 있음.

- 서울시민의 체력 증진과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각종 규정이 집대성되어 기본조례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노인체육 분야를 별도 명기하여 규정하기보다 제16조(생활체육의 진흥)에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

<수정의견>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16조(생활체육의 진흥) (생 략) 1. ~ 6. (생 략)  7. (생 략)	제16조(생활체육의 진흥)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7. (현행과 같음)	제16조(생활체육의 진흥)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u>7.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u>  8. (현행 제7호와 같음)

- 개정안은 노인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해 노인체육 진흥에 관한 사업 추진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노인체육 활성화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적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함.

담당 조사관	박지혜 2180-8117
전문위원	강헌 2180-8114

**붙임 1**

**집행부 검토의견**

의안번호  
2757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제 안 자	제안일자	소관 상임위		
	노승재 의원 외 19명	2021. 10. 1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인체육 진흥에 관한 사업 추진 규정 신설(안 제17조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체육 강좌의 설치·운영, 노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및 대회·행사 등 개최, 노인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노인체육 관련 프로그램 연구·개발 등</li> </ul> </li> </ul>				
추진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1. 10. 13. 노승재 의원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찬성) 김경우, 김기대, 김인제, 김제리, 김창원, 김태수, 김희걸, 박기열, 박기재, 박순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양민규, 오중석, 이정인, 장상기, 홍성룡, 황규복 의원(19명)</li> </ul> </li> </ul>				
부 서 검토의견	원안가결( ) / 수정가결(○) / 부결( ) / 보류( )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20. 6. 9. 시행)에 따라 시장의 노인체육 진흥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 것임</li> <li>○ 하지만,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구분하여 구성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체계상 노인체육은 생활체육의 한 분야이므로, 노인체육 분야를 별도 구분하여 세부업무를 명시하기 보다는 ‘생활체육의 진흥의 한 개 호로 신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li> <li>○ 특히,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노인체육 진흥 업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동시 책무로 규정하고 있어 노인체육 진흥에 관한 업무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업추진을 의무화할 경우, 서울시 재정에 부담 우려도 있으므로 중앙정부와의 역할 구분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li> </ul>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수정안〉 제16조(생활체육의 진흥) 시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해 시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의 권장·보호 및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 6.(현행과 같음) 7.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신설)</p> </div>				
대응방안					
상 입 위 처리결과					
향후계획					
담당부서	체육정책과	팀장	홍성수(☎2133-2677)	담당	이신영(☎2133-2682)